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23
----------	-------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남인순·김 윤·김문수
오세희·임미애·이재관
박지원·이수진·박희승
서미화·이주희·정일영
전진숙·이광희·이훈기
김남희·윤종균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27일 시행예정인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 법에 따른 통합지원은 노쇠뿐만 아니라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 대한 돌봄을 포괄하고 있음.

그런데 돌봄의 개념에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 제명이 현장이나 학계에서 오히려 개념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하며,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심의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의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등 통합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또한 이 법은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통합지원 제공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통합지원의 내용으로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등을 규정하여 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등).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415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일상생활돌봄”을 “일상생활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을 “장애인, 정신질환자”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통합지원”을 “지역별 특성 및 통합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양성”을 “양성 및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제9조의2에 따른 돌봄보장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부서와”를 “부서와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하고 이를”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로, “수립하여 이를”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하고”로 한다.

7.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제9조의2에 따른 돌봄보장위원회”로 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돌봄보장위원회) ① 통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돌봄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전국민 통합지원을 위한 준비 및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4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통합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4

명.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2명을 각각 추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3항제2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시설”을 “시설·개인”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비스를”을 “사업 또는 서비스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 등이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9.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

1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제18조의 제목 “(일상생활돌봄)”을 “(일상생활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
· 제공 또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개조 등의 지원
2.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내 주거이전 지원
3.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의 공급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담조직은”을 “전담조직은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정보시스템

제23조제2항 중 “국민연금”을 “장애인활동 지원, 국민연금”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가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415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u>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u>일상생활돌봄</u>,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u>장애인</u> 등으로서 대통령령	법률 제20415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u>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정의) ----- -----. 1. ----- ----- ----- -----<u>일상생활지원</u>----- ----- ----- ----- -----. 2. ----- ----- ----- ----- ----- -----<u>장애인, 정신질환자</u>-----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 ----- ----- -----.
1. <u>통합지원</u>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1. <u>지역별 특성 및 통합지원</u> --- ----- ----- ----- -----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전문인력의 <u>양성</u> 에 관한 사항	7. ----- <u>양성 및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u> ----- -----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⑤ (생략)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

③ (현행과 같음)

④ -----제9조의2에 따른 돌봄보장위원회-----
-----.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부서와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력 방안 6. (생 략) <u><신 설></u> 7. (생 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해당 시·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다음 연도 지역계획과 당해년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저출산·	----- ----- 6. (현행과 같음) 7. <u>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수립하여 이를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수립하여 이를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 ----- ----- ----- ----- -----제9조의2에
---	--

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
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따른 돌봄보장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돌봄보장위원회) ① 통
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으로 돌봄보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전국민 통합지원을 위한 준
비 및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의 중·장기 정책목
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
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지원에 관한 중
요사항으로서 제4항의 간사위
원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합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된다.

1.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2. 통합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
항에 따라 설립된 전국시도지
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
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 4명. 이 경
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
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
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
단체의 장 중에서 2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
관과 제3항제2호의 위원 중 위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① -

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던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 또는 퇴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퇴소의 여부 등을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하여 퇴원 또는 퇴소 이후에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설>

<신설>

3. (생략)

② (생략)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

-----.

1.·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1. (생략)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
법

3. (생략)

② · ③ (생략)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신 설>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
-----시설 · 개인-----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보건의료) -----

사업 또는 서비스를

-----.

1. ~ 7. (현행과 같음)

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

<신 설>

<신 설>

8. (생 략)

제18조(일상생활돌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

사 등이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9.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

1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11. (현행 제8호와 같음)

제18조(일상생활지원)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

7. ~ 9. (생략)

<신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7. ~ 9.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개조 등의 지원

2.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내 주거이전 지원

3.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의 공급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4. <u>통합지원 관련기관</u>,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6. (생략) ③·④ (생략) 제2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② (생략) ③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통합지원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④·⑤ (생략) 제23조(정보의 제공·활용 등) ①	<u>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u>-----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u>----- ----- 5.·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u>」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정보시스템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정보의 제공·활용 등) ①
---	---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기관 및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주민등록 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 <u>국민연금</u>·고용보험·기초연금·장애인연금, 건강검진, 의료기관 입원·퇴원, 사회복지시설 입소·퇴소, 공공주택의 입주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생 략) ② <u>국가</u>는 통합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실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8조(비용지원 및 부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장애인활동 지원, 국민연금</u>-----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보건복지부장관</u>은-----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비용지원 및 부담 등) ①
---	--

• ② (생 략) ③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 「<u>노인장기요양보험법</u>」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노인장기요양보험법</u>」, 「<u>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u>」----- ----- -----. ④ (현행과 같음)
---	---